|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|
| --- |
| 골 목 경 제 과 |

#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발의연월일 | 2026. . . |
| --- | --- |
| 발 의 자 | 김효석 의원 |

#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# (김효석 의원 발의)

| 의 안 번 호 |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 .  .
발 의 자 : 김효석 의원(1인)
찬 성 자 : 김영태·김원섭·김재우·김정도
김정미·김종화·김지식·김춘남
김현경·소진혁·신용하·양진오
유승헌·이정호·이탕모·장미경
전희정 의원(17인)

## 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상위법령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안전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(범죄예방 내용 추가로 제명에 ‘보호’ 삽입)

나. 지원사업 내 범죄예방 내용 추가(안 제4조)

다. 소상공인지원센터 명칭 변경(소상공인종합센터)(안 제11조)

라. 시행규칙 삭제(법제처 권고 사항)

## 3. 조례안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1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

2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

나. 부서검토: 골목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#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구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

제11조의 제목 “(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”을 “(소상공인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소상공인지원센터”를 “소상공인종합센터”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| 구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
| 제4조(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)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 | 제4조(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) ----------. |
| 1. ~ 7. (생 략)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8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|
| 8. (생 략) |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 |
| 제11조(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를 둘 수 있다. | 제11조(소상공인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---------- 소상공인종합센터----------. |
| ②·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| <삭 제> |

| | |
|---|---|
| 한다. | |

# 관계법령

## 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 략)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**제12조의9(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)**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(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여성 소상공인(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
2.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(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)의 지급
3.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, 비상벨,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

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골목경제과

| 조 례 명 |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
|---|---|

## □ 검토 사항

○ 근거 법령

▪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(정의) 및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▪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 (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)

## □ 주요 사항

○ 조례명 변경(범죄예방 내용 추가로 제명에 '보호' 삽입)

○ 지원사업 내 범죄예방 내용 추가(안 제4조)

○ 소상공인지원센터 명칭 변경(소상공인종합센터)(안 제11조)

○ 시행규칙 삭제(법제처 권고 사항)

## □ 검토 결과

○ 소상공인 범죄예방 등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안전한 경영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 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○ 기대효과

▪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, 지역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

○ 소요예산 : 150,000천원

* 비용추계서 첨부

○ 문 제 점 : 해당사항 없음

[별지 제1호서식]

#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안 제4조 지원사업 내 범죄예방 내용 추가에 따라 법률 제12조의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(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)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시 경상적 제반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지원 근거 마련 후 향후 5년간 사업 추진시 필요한 비용 추계 (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물품 및 장비 지원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세 출 | 15,000 | 22,500 | 30,000 | 37,500 | 45,000 | 150,000 |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 비 | - | - | - | - | - | - |
| 도 비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시 비 | 15,000 | 22,500 | 30,000 | 37,500 | 45,000 | 150,000 |
| 민 간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기 타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합 계 | 15,000 | 22,500 | 30,000 | 37,500 | 45,000 | 150,000 |

5. 부대의견 : 향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파악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실수요와 시비 편성·운영 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는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골목경제과 골목경제기획팀 이흔주(☎ 480-2612)

## 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○ 소상공인 안심물품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| 구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연도별 물품 지원 건수(건) | 100 | 150 | 200 | 250 | 300 | 1,000 |
| 휴대용 안심벨<br>(30,000원/개당) | 3,000 | 4,500 | 6,000 | 7,500 | 9,000 | 30,000 |
| 안심경광등 세트<br>(120,000원/개당) | 12,000 | 18,000 | 24,000 | 30,000 | 36,000 | 120,000 |
| 합 계 | 15,000 | 22,500 | 30,000 | 37,500 | 45,000 | 150,000 |

※ 1건당 휴대용 안심벨 및 안심경광등 세트 각 1개 지원

○ 산출내역 : 안심물품 2종, *연차별 단계적 지원 추진(100개~1000개)

- 휴대용 안심벨(30,000원/개당), 안심경광등 세트(120,000원/개당)
- 5년간 안심물품 1,000건(건당 물품 2종) 지원, 소요예산 150,000천원 필요

○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안심 물품 2종

- **휴대용 안심벨(호신용 경보기 세트)** :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 누르면 고음소리 작동, 스프레이 분사 가능한 호신용 장비
- **안심경광등 세트 :**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 누르면 안심 경광등에서 긴급 사이렌 소리 작동 및 가족·지인 대상 알림 앱 알림 발송

○ 구미시 소상공인 전체 사업체수 : 53,883개소

- 남성 : 31,630(58.7%), 여성 : 22,253명(41.3%)

*연차별 단계적 지원 : 타 지자체 안심물품 지원사업 참고시 단계적 지원이 알맞으며,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수요에 따른 지원 규모 추계가 타당함